##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51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이종욱·신성범·최은석

김예지 · 송언석 · 박수영

김소희 · 김상훈 · 이성권

이종배 · 이인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는 2024년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수요 부진으로 인해 7,377억원 발행에 그침. 시장에서는 수요 부진의 원인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부족과 개인별 연간 매입 한도 제한이 지적됨.

개인별 연간 매입 한도는 정부 고시를 통해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며, 세제 지원 확대는 현행법 개정사항임.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분 리과세 특례를 유지한채, 5억원(기존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 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로 금액을 확대하고, 이자소득 세율은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9로 낮추고자 함(안 제91조의23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억원까지의"를 "5억원까지의" 로, "100분의 14"를 "100분의 9"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br>                    | 개 정 안              |
|----------------------------|--------------------|
|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         |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 |
| 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           | 한 과세특례) ①          |
|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           |                    |
| 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4년         |                    |
|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         |                    |
| 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           |                    |
| 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            |                    |
| 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                    |
|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            |                    |
|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                    |
| <u>2억원까지의</u> 매입금액에서 발     | - <u>5억원까지의</u>    |
| 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           | <u>1</u>           |
| <u>00분의 14</u> 의 세율을 적용하고, | 00분의 9             |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                    |
|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                    |
| 하지 아니한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